

100년운용 종합신탁 계약서 개정 대비표

(개정전)	(개정후)	비 고
<p>100년운용 종합신탁</p>	<p><u>100년운용신탁</u></p>	
<p>제1조 (신탁의 목적)</p> <p>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신탁된 금전을 하나의 신탁계좌 내에서 위탁자가 지시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 위탁자(생전수익자)의 이익을 늘리고, <신설> 위탁자 사망 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(사후수익자)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신탁의 목적)</p> <p>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신탁된 금전을 하나의 신탁계좌 내에서 위탁자가 지시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 위탁자(생전수익자)의 이익을 늘리고, <u>고령·치매 등으로 위탁자의 의사능력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</u>, 위탁자 사망 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(사후수익자)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■ 치매대비 신탁재산 지급 관리 기능 추가 -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100년운용신탁계약 신규 시 신탁재산 지급청구 대리인을 지정하고,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탁된 금전의 지급 관리를 하도록 함</p>
<p>제2조 ~ 제5조 <생략></p>	<p>제2조 ~ 제5조 <좌동></p>	
<p>제6조 (대리인의 지정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<신설></p>	<p>제6조 (대리인의 지정)</p> <p>① <좌동></p> <p>② <좌동></p> <p>③ <u>제9조에 따른 특별지급 개시 신청 시점부터는 제8조의</u></p>	

제7조 <생략>

<신설>

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이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한 모든 지시권을 행사하고, 그때부터 위탁자 및 제1항의 대리인에 의한 운용방법 지시권 행사는 제한된다.

제7조 <좌동>

제8조 (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)

① 위탁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지급에 필요한 신탁재산 지급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의 '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'를 대리하는 신탁재산 지급청구대리인(이하 '지급청구대리인'이라고 함)을 지정할 수 있다.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에 『별도 신청서(수탁자 양식)』에서 지정하는 자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으로 한다.

1. 위탁자의 배우자
2. 위탁자의 4촌 이내의 친족
3. 위탁자의 후견인

② 위탁자는 『별도 신청서(수탁자 양식)』를 제출하여 지급청구대리인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9조 (특별지급)

① 위탁자는 『별도 신청서(수탁자 양식)』를 제출하여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위탁자가 개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청구대리인이 수탁자가 사전에 안내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지급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지급청구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)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, 지급청구대리인이 위탁자의 생활비 목적으로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의 증빙 없이 위탁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후, 지급청구대리인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증빙서류 작성/발급인(기관)에게 증빙서류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.

1. 위탁자에 대한 병원비 / 간병비 용도
2. 위탁자에 대한 요양시설 입주비 등 요양비 용도

④ 지급청구대리인은 수탁자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

<신설>

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청구하여야 한다.

⑤ 위탁자는 『별도 신청서(수탁자 양식)』를 제출하여 특별 지급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연령, 건강상태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정신감정서, 진단서, 소견서 등)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⑥ 지급청구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개시된 때로부터 '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'에 한하여 위탁자를 대리하고, 그때부터 위탁자의 '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'는 제한된다. 다만 제5항에 따라 특별지급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'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'를 하고, 그때부터 지급청구대리인의 '신탁재산 운용지시 및 지급청구'는 제한된다.

제10조 (위탁자 사망사실의 통보)

① 지급청구대리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급청구대리인 이외에도 제3자가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

제8조 ~ 제11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생략>

제12조 (신탁보수)

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.

-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()% x 신탁기간(일수) ÷ 365(윤년은 366일)

[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(일수)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(일수)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]

- 신탁재산 지급 또는 신탁계약 (일부)해지 시 수취함

- <신설>

우 수탁자는 지급청구대리인 또는 사후수익자에게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자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1조 ~ 제14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좌동>

제15조 (신탁보수)

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좌관리보수는 다음과 같다.

-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()% x 신탁기간(일수) ÷ 365(윤년은 366일)

[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(일수)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(일수)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]

- 신탁재산 지급 또는 신탁계약 (일부)해지 시 수취함

- **제9조의 특별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신탁원본 평균잔액 x 연 ()% x 신탁기간(일수) ÷ 365(윤년은 366일)**

변경(특별지급 서비스 추가에 따른 관리보수 증액)

② ~ ⑤ <생략>

제13조 ~ 제16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생략>

제17조 (신탁계약의 종료 및 최종계산)

① ~ ⑦ <생략>

⑧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하고,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탁집행보수를 사후수익자로부터 받는다.

⑨ <생략>

⑩ <생략>

제18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생략>

제19조 (신탁계약의 변경 등)

① ~ ④ <생략>

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『100년운용 종합신탁 계약서』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

② ~ ⑤ <좌동>

제16조 ~ 제19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좌동>

제20조 (신탁계약의 종료 및 최종계산)

① ~ ⑦ <좌동>

⑧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하고,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탁집행보수를 사후수익자로부터 받는다.

⑨ <좌동>

⑩ <좌동>

제21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좌동>

제22조 (신탁계약의 변경 등)

① ~ ④ <좌동>

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『100년운용신탁 계약서』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

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<생략>

제20조 ~ 제27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생략>

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<좌동>

제23조 ~ 제30조 <조문번호 개정, 내용 좌동>